

#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 경과

- 제 출 : 2007. 3. 30.(사천시장)
- 회 부 : 2007 3. 30.(총무위원회, 의안번호 제25호)
- 상 정 : 2007. 4. 16.(제113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의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)

### 가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#### 1) 주민동의 사업의 우선투자(안 제11조)

해당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예산에 배정할 수 있음.

#### 2) 예산참여지역회의(안 제12조 및 제14조)

- 임 기 : 2년(연임 가능)
- 기 능 : 주민 의견을 수렴·집약하는 활동, 우선투자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활동 등

#### 3) 주민참여예산위원회(안 제15조 및 제17조)

- 임 기 : 2년(연임가능)
- 기 능 : 수렴된 주민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수렴, 투자사업 등 예산편성과 관련한 기능 수행

### 다.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최진기)

- 제정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,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
-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동의사업의 경우 우선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, 읍면동에 예산참여지역회의를 두고 시에는 시의회의 의원을 포함, 시민단체 대표, 공무원,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회의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자체사업예산에 반영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- 검토의견으로는 2006. 8. 18 경상남도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하였으며, 관련법 등을 검토한 바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,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타지역의 안 등을 검토하여 심사숙고 후 처리할 수 있도록 보류기로 의견을 모음

### 6. 심사결과 : 보류

### 7. 소수의견 : 없음